

# 예 산 총 칙

2019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777,184,281	53,315,528
일반회계	1,476,122,878	44,283,686
특별회계	301,061,403	9,031,842
공기업특별회계	203,476,322	6,104,29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565,670	46,97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7,857,849	2,635,73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14,052,803	3,421,584
기타특별회계	97,585,081	2,927,552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6,063,073	181,892
수질개선특별회계	15,074,687	452,241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9,764,089	592,923
기반시설특별회계	406,058	12,182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130,115	3,903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303,060	69,092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418,740	42,562
주택사업특별회계	103,588	3,108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48,459,166	1,453,775
지하수특별회계	3,862,505	115,875

제 2 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안)"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455,062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2019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8,200,000천원으로 한다.